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SNS 기록물 명시〉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4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수진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임의 삭제·변경에 대한 법적 통제도 불명확한 실정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로서 역사적·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과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동적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책임정치와 기록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기록까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동 수집·보존 의무와 임의 삭제·변경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 ----- ----- ----- ----- ----- -----말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 비스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 된 전자적 기록정보(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을 포함하 다)를 포함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의2. ~ 3. (생략) <u><신설></u>	1의2. ~ 3.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물의 범위) ①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게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본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한다.</u> <u>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2조제3호의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다.</u>
제11조(이관)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1조(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자동으로 수집·저장·보존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⑥ 대통령 또는 관계기관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헌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그 보좌·자문·경호기관·대통령직인수기관(이하 “보좌기관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하며,¹⁾ 여기서 ‘기록물’은 문서·도서·시청각물·전자문서 등 형태를 가리지 않는 포괄적 개념임.²⁾

또한 ‘개인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적인 기록물로서, 대통령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별도 범주로 규정되어 있음.³⁾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보좌기관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게시·전송한 SNS 기록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관 공식계정의 SNS 기록물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제1의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대통령기록관⁴⁾으로 이관되고 있고, 대통령 개인계정 SNS의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자기록물은 현행법 제7조 제1항⁵⁾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⁶⁾이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이관하고 있음.

< 전직대통령 SNS 기록물 이관 현황 >

구분	합계	공식계정	개인계정	기타
박근혜대통령	10,700건	10,700건	-	공식계정만 이관
문재인대통령	28,570건	24,927건	3,643건	-
윤석열대통령	6,409건	3,765건	2,644건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현행 제도는 대통령 개인 명의 SNS에서 생산된 직무 관련 게시물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와 그 보존·삭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별로 보존·관리의 범위·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7조(생산·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현행법 제8조)

임의 삭제·변경에 대한 통제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 개인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자동 저장·보존 및 임의 삭제·변경 금지 의무를 두어,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생성·소멸되는 대통령의 공적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기록관리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임.

나아가 대통령의 SNS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의 연계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정치와 행정 투명성의 구현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제도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SNS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전자적 기록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SNS 기록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 및 보좌기관등으로

7) 노컷뉴스, “삭제된 李대통령 SNS, 대통령 기록물이다?[노컷체크]”, 2026.02.04.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452>

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에서 새로 사용하는 “대통령비서실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존 정의 체계와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2조의2는 대통령 개인 명의 SNS에서 생산·게시된 기록물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본다고 하면서, 직무 관련성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관리·이관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관리·공개·활용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기록관의 장을 직무 관련성 판단 주체로 별도 추가하는 것은 체계상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 제2조의 정의규

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記述)·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에 따른 공적 기록과 개인기록의 구분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에 가까워 별도의 조항으로 둘 입법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임.

제11조제5항은 대통령의 SNS 계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자동 수집·저장·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인 SNS에는 직무 관련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수집 대상의 범위와 처리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최소 수집 원칙⁹⁾과의 조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러한 자동 수집·저장·보존 의무는 사실상 SNS 기록에 대한 상시적 수집·보존 체계를 전제하게 되므로,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방식, 보안·개인정보 보호 조치, 비직무 관련 자료 선별·분리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9)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 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2018,

SNS 기록의 수집·보존 수단(API, 크롤링, 제3자 아카이빙, 자체 아카이빙 등)을 검토한 결과,

제11조제6항은 대통령 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SNS 기록의 임의 삭제·변경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그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삭제·변경이 허용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이라는 문언은 맥락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임의 삭제·변경 금지 규정은 사실관계 오류 정정, 개인정보 보호, 자료 현행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수정까지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사유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대통령 SNS 기록의 공적 특성을 분명히 하여 기록관리의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보이나, 현행법상 생산·이관 체계와의 정합성, 용어·표현의 명확성, 자동수집 및 삭제·변경 금지 규정의 집행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관 공식 SNS와 대통령 개인 SNS 중 직무수

플랫폼별 정책 변화와 데이터 손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집·보존을 위해서는 별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행과 관련된 기록은 이미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이관되고 있고, 개인 명의 SNS의 직무 관련성 판단도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SNS를 다시 법률에 명시하여 관리하려는 개정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협의하여 판단하거나 SNS 기록의 자동 수집·저장·보존 및 임의 삭제·변경 금지를 규정하는 방식은 현행 이관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오류 정정, 자료 현행화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연번	유형	기관명	설치근거
1	보좌	대통령비서실	「정부조직법」 제14조
2		국가안보실	「정부조직법」 제15조
3	경호	대통령경호처	「정부조직법」 제16조
4	자문 (가나다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
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8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법」 제12조
9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2조
10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12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한민국헌법」 제91조
13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1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5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
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17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한민국헌법」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
18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2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민국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
2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훈령)
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26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훈령)
27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2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

자료: 대통령기록관 보도자료(2025. 6. 4.) 발췌